

「2023년 제1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」 공고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, 지원하는 사업 중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2. 10.

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 :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

나. 지원대상 :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

다. 공고기간 : '23. 2. 10. ~ '23. 2. 27.

라. 접수기간 : '23. 2. 10. ~ '23. 2. 27. 16:00

마. 사업기간 : '23. 2. 10. ~ '23. 11. 10.1)

바.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※ '23년 지원사업의 총 합계기준

사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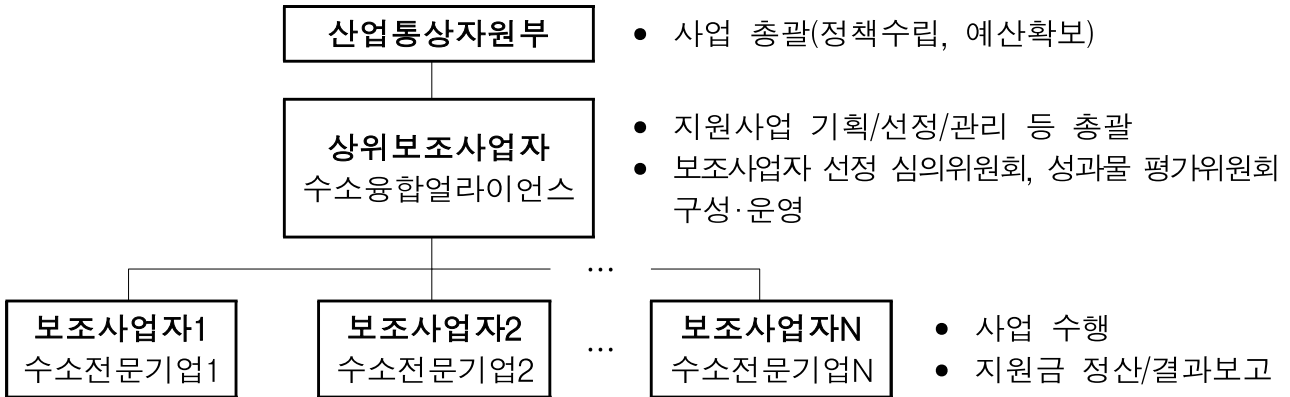
구분	분야	내용
기술사업화	시제품 제작	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(test sample) 제작
	인증획득	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대행비
	지식재산권	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·분석 등
	기술보안	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, 장비 지원
	기술도입	국내 기술도입 비용 지원
	연구장비 활용	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
판로개척	시장조사	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
	디자인 개선	신규·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
	BI·CI 개발	BI(Brand Identity)·CI(Corporate Identity) 개발 지원
	전시회	부스 임차·설치, 비품 임차, 참가비, 장치 설치비 등
컨설팅	홍보	기업·제품·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등 제작
	컨설팅	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

※ '대기업'은 인증획득 분야에 한하여 지원

1) 기술사업화 중 시제품 제작, 인증획득 분야는 2개년 연속사업*으로 신청 가능 (사업기간 : '23. 2. 10. ~ '24. 11. 10)

*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가 예상될 때, 총사업비 1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년도 사업기간 말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

아. 추진체계



2.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

가. 사업비 구성 :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

기업규모	총사업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
대기업	100%	총 사업비 40% 이내	총 사업비 60%(현금) 이상
중견기업·중소기업		총 사업비 80% 이내	총 사업비 20%(현금) 이상

- 대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
나. 정부지원금 지급 :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(‘23년 지원 한도)

구분	정부지원금 지급비율	지급 시기
단년도 사업	선금 100%, 잔금 0%	협약체결 완료 및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후 지급
2개년 연속사업	‘23년 선금* (총사업비 중 100% 이내)	협약체결 완료 및 ‘23년 사업비의 20%이상 기업부담금 입금 후 선금 지급
	‘24년 잔금 (총사업비 중 잔금)	1년차 중간평가 후 ‘24년 사업비의 20% 이상 기업부담금 ²⁾ 입금 후 잔금 지급

*1년차 선금은 1년차에 모두 집행이 필요하며, 2년차로 이월이 불가능함

다.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

제출서류	제출시기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
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	정부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제출	정부지원금 전액 + 부가세	협약기간 + 90일

2) 2년차 사업 기업부담금은 원칙적으로 ‘24년 사업비의 20% 이상이지만, 1년차 사업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20%를 초과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총 기업부담금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20% 이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금 신청 가능

(예시) $\frac{(15\text{백만입금} + 10\text{백만추가입금}) + (5\text{백만})}{(75\text{백만} + 75\text{백만})} \geq 20\%$ * $\frac{\text{②1년차 기업부담금 25백만원일때} \rightarrow \text{③2년차 기업부담금 5백만원 이상 입금 가능}}{\text{①2개년 총사업비 150백만원}}$

3.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

기술사업화

분야	내용	지원 한도 (백만원)																
시제품 제작	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(test sample) 제작 지원	150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설계비</td> <td>·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 ※ 완전금형제작 시 Mold base에 지원사업 각인 및 명판부착</td> </tr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·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</td> </tr> <tr> <td>외부제작</td> <td>·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</td> </tr> <tr> <td>성능확인</td> <td>·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</td> </tr> <tr> <td>기계장치</td> <td>·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</td> </tr> <tr> <td>지원제외</td> <td>·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 ·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</td> </tr> <tr> <td>비고</td> <td>· 시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 · 성능확인 시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설계비	·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 ※ 완전금형제작 시 Mold base에 지원사업 각인 및 명판부착	재료비	·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	외부제작	·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	성능확인	·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	기계장치	·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	지원제외	·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 ·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	비고	· 시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 · 성능확인 시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
	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		
	설계비		·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 ※ 완전금형제작 시 Mold base에 지원사업 각인 및 명판부착															
	재료비		·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															
	외부제작		·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															
	성능확인		·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															
	기계장치		·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															
지원제외	·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 ·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																	
비고	· 시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 · 성능확인 시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																	
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대행비 등 지원	150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증비</td> <td>·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·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·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시험비</td> <td>·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</td> </tr> <tr> <td>대행비</td> <td>· 인증 획득을 위한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 등</td> </tr> <tr> <td>지원제외</td> <td>·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 ·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</td> </tr> <tr> <td>비고</td> <td>·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 必 (단 발급 진행 중인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진행사항 보고 후 전담기관과 협의 진행) · 대행비는 지원금의 50% 이내로 지원 신청 가능 ·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必 ·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 · 제품인증 취득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기관에서 인증시험 진행 必 - 인증기관: ISO 17065에 따라 인정 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한국제품인증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 - 시험기관: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 (KOLAS, APLAC, ILAC 등) 에서 ISO 17025에 따라 인정 받은 기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인증비	·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·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·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	시험비	·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	대행비	· 인증 획득을 위한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 등	지원제외	·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 ·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	비고	·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 必 (단 발급 진행 중인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진행사항 보고 후 전담기관과 협의 진행) · 대행비는 지원금의 50% 이내로 지원 신청 가능 ·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必 ·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 · 제품인증 취득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기관에서 인증시험 진행 必 - 인증기관: ISO 17065에 따라 인정 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한국제품인증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 - 시험기관: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 (KOLAS, APLAC, ILAC 등) 에서 ISO 17025에 따라 인정 받은 기관					
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			
인증비		·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·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·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
시험비		·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																
대행비	· 인증 획득을 위한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 등																	
지원제외	·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 ·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
비고	·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 必 (단 발급 진행 중인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진행사항 보고 후 전담기관과 협의 진행) · 대행비는 지원금의 50% 이내로 지원 신청 가능 ·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必 ·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 · 제품인증 취득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기관에서 인증시험 진행 必 - 인증기관: ISO 17065에 따라 인정 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한국제품인증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 - 시험기관: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 (KOLAS, APLAC, ILAC 등) 에서 ISO 17025에 따라 인정 받은 기관																	
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, 장비 지원	100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술보호</td> <td>· 기술보호 상담·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임차료(총 12개월분) 등</td> </tr> <tr> <td>지원제외</td> <td>·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(장비구입 비용)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기술보호	· 기술보호 상담·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임차료(총 12개월분) 등	지원제외	·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(장비구입 비용)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											
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			
기술보호	· 기술보호 상담·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임차료(총 12개월분) 등																	
지원제외	·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(장비구입 비용)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																	

분야	내용	지원 한도 (백만원)										
기술 도입	<p>국내 기술도입 비용지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9 320 1276 779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79 320 391 365">구분</th> <th data-bbox="391 320 1276 365"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79 365 391 678">기술도입</td> <td data-bbox="391 365 1276 67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대학교,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한 특허(출원/등록)의 양수도계약, 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료, 중개수수료, 기술지도, 기술노하우 비용지원 ※ 기술료는 사업 기간 내 납부하는 정액 기술료 또는 선급 기술료에 한해 지원 ※ 중개수수료 수소전문기업이 기술도입 계약을 중개한 중개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 ※ 기술도입 계약에는 필요시 도입 대상 특허와 관련된 기술노하우(코드, 보고서 등), 기술 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678 391 723">지원제외</td> <td data-bbox="391 678 1276 72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술 자문 등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723 391 779">비고</td> <td data-bbox="391 723 1276 77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기간 내 기술도입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必 ※ 사업 신청시 기술권리 소유기관에서 발행한 기술 이전확약서(의향서) 제출 必 ※ 사업 완료시 기술도입 계약서, 특허권리 변경 증빙서류(특허등록원부 등) 제출 必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세부항목	기술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대학교,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한 특허(출원/등록)의 양수도계약, 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료, 중개수수료, 기술지도, 기술노하우 비용지원 ※ 기술료는 사업 기간 내 납부하는 정액 기술료 또는 선급 기술료에 한해 지원 ※ 중개수수료 수소전문기업이 기술도입 계약을 중개한 중개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 ※ 기술도입 계약에는 필요시 도입 대상 특허와 관련된 기술노하우(코드, 보고서 등), 기술 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	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술 자문 등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기간 내 기술도입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必 ※ 사업 신청시 기술권리 소유기관에서 발행한 기술 이전확약서(의향서) 제출 必 ※ 사업 완료시 기술도입 계약서, 특허권리 변경 증빙서류(특허등록원부 등) 제출 必 	100		
구분	세부항목											
기술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대학교,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한 특허(출원/등록)의 양수도계약, 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료, 중개수수료, 기술지도, 기술노하우 비용지원 ※ 기술료는 사업 기간 내 납부하는 정액 기술료 또는 선급 기술료에 한해 지원 ※ 중개수수료 수소전문기업이 기술도입 계약을 중개한 중개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 ※ 기술도입 계약에는 필요시 도입 대상 특허와 관련된 기술노하우(코드, 보고서 등), 기술 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											
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술 자문 등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										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기간 내 기술도입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必 ※ 사업 신청시 기술권리 소유기관에서 발행한 기술 이전확약서(의향서) 제출 必 ※ 사업 완료시 기술도입 계약서, 특허권리 변경 증빙서류(특허등록원부 등) 제출 必 											
지식 재산권	<p>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·분석 지원 등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9 846 1268 1249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79 846 391 891">구분</th> <th data-bbox="391 846 1268 891"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79 891 391 969">권리화</td> <td data-bbox="391 891 1268 96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특허·디자인 출원 지원 · 국외 출원, PCT 국제출원 지원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969 391 1014">특허 분석</td> <td data-bbox="391 969 1268 101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1014 391 1093">지원제외</td> <td data-bbox="391 1014 1268 109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출원 지원 불가 ·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(가출원 불가)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1093 391 1249">비고</td> <td data-bbox="391 1093 1268 124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必 ·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(출원인) 가능 ·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 ·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세부항목	권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특허·디자인 출원 지원 · 국외 출원, PCT 국제출원 지원 	특허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 	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출원 지원 불가 ·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(가출원 불가) 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必 ·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(출원인) 가능 ·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 ·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	30
구분	세부항목											
권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특허·디자인 출원 지원 · 국외 출원, PCT 국제출원 지원 											
특허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 											
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출원 지원 불가 ·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(가출원 불가) 										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必 ·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(출원인) 가능 ·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 ·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											
연구 장비 활용	<p>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9 1305 1276 1417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79 1305 391 1350">구분</th> <th data-bbox="391 1305 1276 1350"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79 1350 391 1417">비고</td> <td data-bbox="391 1350 1276 1417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(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, zeus.go.kr)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시설·장비 예약 및 이용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세부항목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(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, zeus.go.kr)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시설·장비 예약 및 이용 	20						
구분	세부항목										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(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, zeus.go.kr)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시설·장비 예약 및 이용 											

판로개척

분야	내용	지원 한도 (백만원)														
시장 조사	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	20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3D3D3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장조사</td> <td>· 국내외 생산동향, 수입·수출동향, 경쟁사 등 조사</td> </tr> <tr> <td>제품비교</td> <td>·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시장조사	· 국내외 생산동향, 수입·수출동향, 경쟁사 등 조사	제품비교	·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								
	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
시장조사	· 국내외 생산동향, 수입·수출동향, 경쟁사 등 조사															
제품비교	·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															
제품비교	·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															
디자인 개선	신규·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	20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3D3D3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고</td> <td>·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비고	·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										
	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
비고	·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															
비고	·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															
BI·CI 개발	BI(Brand Identity)·CI(Corporate Identity) 개발 지원	20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3D3D3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고</td> <td>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비고	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										
	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
비고	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															
비고	·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															
전시회	부스 임차·설치, 비품 임차, 참가비, 장치 설치비 등	20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3D3D3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 온라인</td> <td>· 참가비,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</td> </tr> <tr> <td>국내 오프라인</td> <td>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</td> </tr> <tr> <td>국외 온라인</td> <td>· 참가비, 통역비, 바이어 매칭비, 홍보물 제작비</td> </tr> <tr> <td>국외 오프라인</td> <td>· 왕복 항공료(1인) 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 · 통역비</td> </tr> <tr> <td>지원제외</td> <td>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(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참가전시회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, 팸플릿,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, 현지 체재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, 비자 발급비,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(외화결제 시,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),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(팝업스토어 포함) 등 참가, 타 지역 계열사·타사 명의사용·타사 공동참가</td> </tr> <tr> <td>비고</td> <td>· 홍보물: 전시회에 활용하는 홍보자료만 지원 가능하며, 모든 홍보자료에는 참가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·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	국내 온라인	· 참가비,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	국내 오프라인	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	국외 온라인	· 참가비, 통역비, 바이어 매칭비, 홍보물 제작비	국외 오프라인	· 왕복 항공료(1인) 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 · 통역비	지원제외	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(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참가전시회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, 팸플릿,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, 현지 체재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, 비자 발급비,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(외화결제 시,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),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(팝업스토어 포함) 등 참가, 타 지역 계열사·타사 명의사용·타사 공동참가	비고	· 홍보물: 전시회에 활용하는 홍보자료만 지원 가능하며, 모든 홍보자료에는 참가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·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
	구분		세부항목													
	국내 온라인		· 참가비,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													
	국내 오프라인		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													
	국외 온라인		· 참가비, 통역비, 바이어 매칭비, 홍보물 제작비													
	국외 오프라인		· 왕복 항공료(1인) 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 · 통역비													
지원제외	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(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참가전시회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, 팸플릿,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, 현지 체재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, 비자 발급비,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(외화결제 시,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),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(팝업스토어 포함) 등 참가, 타 지역 계열사·타사 명의사용·타사 공동참가															
비고	· 홍보물: 전시회에 활용하는 홍보자료만 지원 가능하며, 모든 홍보자료에는 참가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·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															
국내 온라인	· 참가비,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															
국내 오프라인	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															
국외 온라인	· 참가비, 통역비, 바이어 매칭비, 홍보물 제작비															
국외 오프라인	· 왕복 항공료(1인) ·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·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 · 통역비															
지원제외	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(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참가전시회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, 팸플릿,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, 현지 체재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, 비자 발급비,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(외화결제 시,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),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(팝업스토어 포함) 등 참가, 타 지역 계열사·타사 명의사용·타사 공동참가															
비고	· 홍보물: 전시회에 활용하는 홍보자료만 지원 가능하며, 모든 홍보자료에는 참가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·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															

분야	내용	지원 한도 (백만원)		
홍보	기업·제품·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등 제작	20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88 353 405 403">구분</th> <th data-bbox="405 353 1284 403">세부항목</th> </tr> </thead> </table>		구분	세부항목
	구분		세부항목	
	홍보물		· 인쇄용 또는 전자용 브로슈어·리플렛·팜플렛·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, 배너 등 제작	
	온라인 광고비		· 키워드 광고비(ex. 네이버 키워드 광고, 구글 키워드 광고 등) · 배너 광고비(ex. 네이버 배너, 카카오톡 광고 등) · 소셜 마케팅 광고비(ex. 유튜브 광고, 인스타그램 광고 등) · 온라인 언론 및 인터뷰 등	
	오프라인 광고비		· 신문, 잡지, TV, 라디오 등 매체 광고비 · 오프라인 언론 및 인터뷰 등	
지원제외	· 유튜브·SNS 계정 운영비			
비고	· 기획, 디자인, 외국어 번역 비용 등 일체 포함			

컨설팅

분야	내용	지원 한도 (백만원)	
컨설팅	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	20	
	구분		세부항목
	경영		· 세무, 회계, 노무, 경영, 재무, 특허, 법률 등
	마케팅		· SNS 마케팅, 수출 절차 전략,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
	투자유치		· IR(Investor Relations) 컨설팅, 국·내외 투자유치 전략수립, IR자료 작성 등
	인증획득		· 국내외 인증획득(용품검사 포함)을 위한 컨설팅
	정보보안		· 지식재산권 상담, 경쟁사와의 분쟁예방 등 기술보호·유출관련 특허법인 등과의 상담 자문 관련 · 해외 개인정보보호(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, 미국 소비자보호법(CCPA)) 등
	화학물질		·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·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등
	스마트공장		·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
	조달청 우수제품		·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「우수조달 물품지정관리규정」(조달청고시)에 지원
기타	· 그 외 필요 분야의 컨설팅		

- 지원금 한도 內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(복수선택 · 다수의 성과물 가능)
 - 예시** ①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, ②분리막A 홍보 3천만원, ③분리막A 전시회 1천만원, ④분리막A 시장조사 1천만원
 - 예시** ①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, ②분리막B 시제품 제작 5천만원, ③분리막C 시제품 제작 5천만원
 - 예시** ①시제품제작(2개년 연속사업) 1년차 1억원 (2년차 시제품제작 5천만원)
②인증획득(2개년 연속사업) 1년차 3천만원 (2년차 인증획득 3천만원)
③홍보 2천만원
 - 예시** 분리막A 홍보 2천만원 → 분리막A 카탈로그 + 영상 + 배너 등 제작
 - 예시** 분리막A 홍보(카탈로그) 2천만원, 분리막A 홍보(동영상) 2천만원
- 지원금 상향을 위해 동일 사업모델 + 동일 분야 + 동일 성과물 신청 불가
 - 예시** **불가** ①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, ②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
- 견적서 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통상 발행 후 3개월이내 인정

4. 추진 절차

절차	내용	비고
신청·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e나라도움'을 통한 온라인 신청 • 신청서·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	수소전문기업
서면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	수소융합얼라이언스
선정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 	선정심의위원회
협약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• 최종사업계획서 기준 협약 체결 	수소융합얼라이언스, 수소전문기업
기업부담금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부담금 입금 	수소전문기업
정부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지원금(100%) 교부 신청 • 기업부담금 이체확인증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※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	수소융합얼라이언스, 수소전문기업
사업수행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실시 	수소전문기업
최종보고서 ³⁾ 제출·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·최종보고서 제출 • 사업 결과 최종확인점검 	수소전문기업, 확인평가위원회
사업비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산보고서 제출 •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	수소전문기업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•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	수소융합얼라이언스, 수소전문기업

※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) 2개년 연속사업은 첫째 중간평가*로 대체 후 사업비 정산 → 2차년도 사업 신청·접수 절차 진행

* 중간성과물(목업제품, 인증획득 경과보고서 등)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

5.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가. 신청자격 :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

나. 지원제외 대상

-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, 총 4.5억원을 초과 지원 받은 기업
-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의 협약·계약과 관련하여 위반·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
-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

-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협약서 제출에 의함
-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

6.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
가. 신청방법 :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
-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
- '공모사업 찾기'를 통해 <2023년 제1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> 검색
-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
- 각 분야의 사업별 한도 내 다수의 사업 신청가능하며, 사업별 별도 서류 제출 必
 - 시제품제작1(1억원), 시제품제작2(5천만원) 등 구분하여 별도 서류 제출
-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,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
나. 제출기한 : '23. 2. 27. 16:00

7. 제출 서류

제출순	제출서류	서식	부수
1	신청서	서식1	1부
2	사업계획서 * 붙임. 사업비 근거 자료	서식2	1부 * 한글(hwp)
3	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	서식3	1부
4	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대표자용)	서식4	1부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담당자용) * 사업 책임자, 사업 담당자	서식5	각 1부
6	청렴서약서	서식6	1부

- 한글(hwp)을 사용하여 작성
-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(천원단위 절사)
- ‘사업계획서’ 서식2는 이메일 별도 배부
- ‘사업계획서’는 ‘한글(hwp)’으로 제출**必**
- **사업비 근거 자료(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)는 필히 ‘사업계획서’의 붙임으로 제출해야 하며, 별도 파일로 제출 불가**
-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‘해당없음’으로 기술
- 날인/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,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/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
-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
-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
 - ‘할 수 있다’, ‘고려하고 있다’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,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
-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
-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,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
-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,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 - 제출서류명_기업명_분야.pdf’ 또는 ‘제출서류명_기업명_키워드.pdf’
 - 제출 건당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
- 제출서류 파일 **예시**
 - 혁신수소(주)_분야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.zip
 - 1. 신청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.pdf
 - 2. 사업계획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.hwp
 - 3.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.pdf
 - 4.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.pdf
 -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_홍길동.pdf
 -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_김철수.pdf
 - 6. 청렴서약서_혁신수소(주)_시제품제작_.pdf

8. 평가기준 및 선정

기준		내용	배점
사업의 타당성 (70점)	사업목적의 타당성	· 사업목적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? ·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? ·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?	20
	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	· 사업내용이 확실한가? ·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? · 사업대상, 범위,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?	20
	유사중복여부	·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? ·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? ·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?	10
	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	· 사업비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가?	10
	사업기간내 집행 가능성	·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충분한가?	10
사업 관리 체계 (30점)	사업 수행역량	· 사업 이해도, 수행의지, 역량 보유 등	15
	기대효과	·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, 파급효과 등	15
합계			100

9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-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
-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
-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

10. 유의사항

- 졸업제 적용 → 수소전문기업당 총 4.5억원을 초과하여 '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' 지원 불가 (국비지원금 신청 시, 전액소진할 수 있는 금액 신청)
-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, 인건비·자산취득·부가세 포함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
-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날인/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/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/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
-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·규정·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,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·규정·지침에 따름
- 허위기재 또는 관련문서의 위·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(계좌)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 필요
*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'0원'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
- 예산 비목/세목 변동 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사업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,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·집행한 예산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
-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 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-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에 의해 확정되며,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·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위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
-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신청기업에게 있음

11. 문의처

구분	문의처	
사업 문의	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	☎02-6258-7469, 7461, 7464 support@h2korea.or.kr
온라인 시스템 문의	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	☎1670-9595